

1. 개정이유

지난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하며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한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 등 개선 필요
- 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개선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경

우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

- 2)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함

*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 농장내로 일시적 진입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진입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2의4 개정)

-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 2)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 접근 방지하고, 주변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명확한 방역기준을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 방역기준 준수를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없이 계약사육농가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의15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성하여”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 이외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 소독 실시 여부를 영상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차량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제2호 개별기준은 각 목의 업종별로 구비하여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마. 각 소독설비는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 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1) 소독설비 란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1) (다) 단서 중 “등 출입을”을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로, “자연경계를 갖춘”을 “자연경계인”으로 하며, 같은 목 (2) 소독설비 란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2) (다) 단서 중 “등 출입을”을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로, “자연경계를 갖춘”을 “자연경계인”으로 하며,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사육업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3) (가) 중 “차량”을 “각 차량”으로, “소독”을 “세척·소독”으로, “장치를 설치할

것”을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로 하며, 같은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 또는 분무용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나) 중 “사육시설의”를 “사육시설의 각”으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농장의”를 “농장의 각”으로 하며, 같은 란 (라) 중 “출입기록부”를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로 하고, 같은 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마) 중 “방문차량”을 “각 차량 출입구별 방문차량”으로 하고, 같은 (3) (가) 본문 중 “농장의”를 “농장의 각”으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농장 입구”를 “농장의 각 출입구”로 하고, 같은 란 (다) 본문 중 “설치하되,”를 “설치하되, 각”으로 하며, 같은 (다) 단서 중 “등 출입을”을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로, “자연경계를 갖춘”을 “자연경계인”으로 하고, 같은 란 (바) 단서 중 “닭·오리”를 “가금”으로 하며, 같은 란 1) 본문 중 “닭·오리를”을 “가금을”로 한다.

(바)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1) 본문 중 “축사 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로 하고, 같은 1)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 2) 본문 중 “기후”를 “기상여건”으로, “실내”를 “축사 실내와 연결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2)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에 3) 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 ·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펜스 · 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 4)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것
- 5)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구비하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샤워시설 내부용 신발(또는 덧신, 비닐신발)을 구비할 것. 다만, 전실 공간이 좁아 신발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비치된 각각의 신발소독조에 샤워시설 외부용과 내부용 신발을 담귀 보관할 수 있으며, 샤워시설 내부용 1회용 덧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발장과 세척용 솔을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 6)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를 구비할 것
- 7) 전실 밖에서 외부 신발을 벗고, 전실 입구에서 내부 신발로 갈아신고 입장하여 전실에서 샤워시설 진입 시 샤워시설 입구에서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으로 다시 갈아신는 경우에는 3)호와 5)호의 설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사) 중 “닭 · 오리”를 “가금”으로, “배수구”를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로 하고, 같은 란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란 (아) 중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를 “출입구, 방역실 출입구,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와 내부, 전실 내부 (최근 3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한한다)”로, “임상증상 등에 관한”을 “임상증상,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으로, “것”을 “것.”로 한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 및 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에 (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상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10 제2호나목 소독설비 란, 같은 호 다목 소독설비 란 및 같은 호 라목 소독설비 란 중 “소독시설”을 각각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목 (2) 중 “것”을 “것.”로 하며, 같은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마목 소독설비 란, 같은 호 바목 소독설비 란, 같은 호 사목 소독설비 란, 같은 호 아목(1) 및 같은 목 (2) 소독설비 란 중 “소독시설”을 각각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2) (나) 단서 중 “등 출입을”을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로, “자연경계를 갖춘”을 “자연경계

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호 차목 소독설비 란 중 “소독시설”을 각각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등 출입을”을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로, “자연경계를 갖춘”을 “자연경계인”으로 하며, 같은 란 (8) 중 “임상증상”을 “임상증상,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 실시”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소독설비 란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 및 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별표 2의2 제19호의 등록대상 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농장내로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거친 후에 농장내로 진입할 수 있다.

별표 2의4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제4호카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 제4호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 하목부터 너목까지,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한다.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리 부화용 알에 한하여 부화장에서 난좌 세척·소독 시설을 구비·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알의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 마다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마. 가축 사육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농장내 외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1의10의 기준에 따른 물품반입창고(시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오염 방지 목적에 적합한 덮개 포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3. 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4.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5. 사료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남은음식물사료 외의 단미사료는 제외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6. 조(粗)사료운반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라 등록된 단미사료·배합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섬유질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은 사료로서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 또는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대행하는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7.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

	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8.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 쌀겨, 톱밥 또는 깔짚을 운반하는 차량
9. 퇴비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난좌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난좌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11. 가금부산물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과 관련한 축산관계시설에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만, 도축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 및 개를 사육하는 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12. 가축 사체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가축의 사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소각·매몰 등에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13. 진료, 예방접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 또는 예방접종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4. 인공수정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5. 컨설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6.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7. 기계수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8.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출하·상하차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차량
19.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농장내로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거친 후에 농장내로 진입할 수 있다.

바. 가금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각 출입구, 각 방역실 출입구, 전실

내부(2020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한한다),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 및 내부에는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상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중 가금의 출하를 위한 가축운반차량은 하목에도 불구하고 가금 입출하를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된 공간 내의 가금 사

육시설의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된 공간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장비는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차량과 장비가 출입한 장소는 생식회를 도포하여야 한다.

거. 일제 출하 후 가금을 사육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가금 사육시설의 청소·세척을 위한 차량·장비는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한 사육시설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금 사육시설에 진입하는 차량과 장비는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차량과 장비가 출입한 장소는 생식회를 도포 등 소독조치를 하여야 한다.

너.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장 진입로 등에 생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러. 가금 사육업자 중 농장내에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머.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가금 사육업자는 위반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보완한 후에 해당 가금을 입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호의16서식 부터 별지 제1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16서식 부터 별지 제1호의19서식 까지 및 별지 제1호의20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계약사육농가 교육 및 점검결과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점검자	축산계열화사업자명		점검자명
	전화번호		
	주소		
점검 내용	점검한 가축의 종류 돼지[], 닭[], 오리[], 염소[], 혼합[]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 m ²	사육 형태 축사[], 방목[], 축사 및 방목 혼합[]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독설비[], 방역시설[], 정상 작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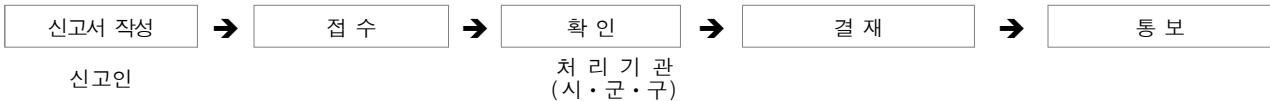
붙임 서류	1. 계약사육농가 점검표 1부. 2.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전, 후 사진 1부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뒤쪽)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 농가 점검결과표

□ 농장명(축주) : □ 주소(연락처) :

○ 돼지, 염소

축종	동	사육두수	폐사율(수)	형태 (돼지:개방식/무창식) (염소: 축사/방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여 / 부	여()명 / 부

○ 가금류

축종	동	사육두수	폐사율(수)	산란율 (산란가금)	형태 (평사/케이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여 / 부	여()명 / 부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제출 사진	비고
농장 입구 사립/ 차량 소독시설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여/부	첨부	
	대인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출입통제 시설	차량 진입 차단장치(차단바, 줄 등) 설치 여부			
	- 출입구가 닫혀 있는지 여부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울타리·담장	농장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			
방역실	농장 입구에 방역실 설치 여부			
	- 대인 소독, 신발 소독을 위한 설비 구비 여부			
	- 출입자가 착용할 작업복·신발·장갑 등 구비 여부			
전실	축사 입구에 전실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방역실로 대체 가능			
	- 신발소독조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되어 있는지 여부			
	- 축사 전용 장화와 손 소독(세척) 시설 구비 여부			
차단망(그물망)	사육시설과 환풍구, 배수구 등에 차단망 설치 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및 방역수칙 교육 여부			
생석회	농장 출입구와 둘레에 생석회 도포 여부			
기타 방역수칙	축사 노후화 등으로 구멍난 곳은 없는지 여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트랙터 등 농기계와 농기구의 농장 내 진입(반입)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철저히 세척소독 후 반입하되 축사 인근에 보관 금지			
	사료빈과 퇴비사 주변 청결 유지 및 소독			
	축사 진입 전 손 씻기와 신발(장화) 갈아신기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			
	구서·구충작업			

□ 미비사·미비사항 등 개선조치 내역

○ 미비사항 :

○ 개선사항(개선일자) :

▪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점검자 : (성명)

(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u>실시하고</u> ,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 ----- ----- ----- ----- ----- ----- ----- ----- ---- <u>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 방역기준 준수를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없이 계약사육농가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의15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성하여</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